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박기열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2450호
- 다. 발의일자: 2021. 5. 27.
- 라. 회부일자: 2021. 6. 1.

2. 제 안 사 유

- 2011년 3월 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고유식별 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.
- 본 조례의 확인서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11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년월일(10개 광역자치) 또는 차량번호만(1개 광역자치)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별지 서식 확인서 갑지 및 을지의 소유자란 중 “주민(사업자)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”로 하고 운전자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생년월일로 변경함(별지 서식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위반 시 작성하는 확인서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2011년 3월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,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개정된 바 있음.
-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,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